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520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다. 제출일자 : 2015. 6. 10.
- 라. 회부일자 : 2015. 6. 17.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정투자사업의 관리 강화와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주민공개 확대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나.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5조)
 - 1) 위원회의 구성
 - 가) 15명 이내 공무원위원과 위촉(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이 전체위원의 4분의 1 초과 금지

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 초과 금지

다)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 가능

라) 위원장: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마) 간사: 예산운영담당사무관

2) 기능: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해촉'에 관한 사항

가) '제척·기피·회피'의 사유:

① 심의대상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② 업무적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중인 자

나) '해촉의 사유:

① 심신 장애 또는 장기여행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심의에 참여한 경우

③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다.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심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0조)

1) 회의 소집: 위원장

※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정족수: 개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3) 투자심사업무 담당부서의 실무투자심사단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

가) 위원회의 심사 전 단계로서 재원조달능력과 사업타당성 등 기본 항목에 대한 실무차원의 심사 실시

4) 관계공무원 등의 회의 출석·발언 및 자료 제출의 근거조항 규정

라.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1) 기능: 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특수공시 선정사항 심의

2)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규정 준용

마. 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1) 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바. 운영세칙, 시행일,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부칙 제1조~제2조)

1) 세칙규정: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음

2) 시행일: 공포한 날

3)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가)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인정

나) 조례에 따라 최초 구성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위원의 임기 종료일인 2017년 4월 9일까지로 함.

※ 1996년 10월부터 기수별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 6월 현재 제10기 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임(2015.4.10.~2017.4.9.)

다) 「지방재정법」의 위임 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명확하게 정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37조, 제37조의2, 제6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68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협의 : 해당기관 없음

다. 기타 :

- 입법예고(2015. 5. 14. ~ 5.25.): 의견 없음.
-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 평가: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 평가: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가.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5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520호로 제출되어 2015년 6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재정투자사업의 관리 강화와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주민공개 확대를 위해 조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의 “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나. 주요 검토의견

1) 조례안의 제정 경위에 대한 설명

- 국회는 지난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관련 자문기관으로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습니다.
- 현행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운영에 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르면 지방재정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 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¹⁾

- 동 조례안은 상기의 4개의 위원회 중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²⁾.

2)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대한 의견

가.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의견

- 정부는 한정된 투자재원을 부문별·연도별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적 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계 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995년에 일정금액 이상의 재정투자의 사전 투자심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서울시교육청도 이러한 투자심사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투자심 사위원회운영규칙」(이하 ‘투자심사규칙’이라 함)을 제정하여 재정투 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하여 왔 습니다.
- 동 조례안의 내용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교육규칙의 내용을 조례 형식을 통해 재구성한 것으로 내용면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관련 규정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5항에서 민간위원의 임기와 관련된 부 분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준용하도록 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와 관련된 사항은 조례 규정사항이라 할 수 있음.

2) 4개의 위원회 중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이미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 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5년 6월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어 제261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임.

참고로 과거와 달라진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안 제3조제2항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현행 투자심사규칙 제2조에서는 공무원 위원에 대한 인원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동 조례안에서는 전체 위원 15명 중 공무원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고³⁾,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도 현행 투자심사규칙 제2조에는 성비구성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동 조례안에서는 어느 한 성(性)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⁴⁾ 위원회 구성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또한 안 제4조 위원의 기피와 관련하여, 현행 투자심사규칙 제2조의2제1항제1호에는 ‘위원이 당사자이거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척사유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동 조례안은 신분상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4조제2항에서 심의대상사업의 당사자가 동 조례안 제4조제1항의 사유⁵⁾로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변경된 사항들은 상위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의 형평성 및

3)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3항 참고.

4)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 참고.

5) 제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업무적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 중에 있는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례 제정에 있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안 제6조제5항에 대한 의견

- 동 조례안 제6조제5항은 위원의 과반수 출석이 어렵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을 요할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동 조항의 경우 “과반수 출석이 어려울 경우”나, “필요한 경우”에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가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적지 않고, 그 결과 투자심의회가 부실화되고 공정성을 훼손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해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대한 의견

- 다음으로 재정공시제도는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자율통제를 통한 건전한 재정운동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994년 12월 22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⁶⁾ 도입되었습니다.
- 그동안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재정공시를 의무적으로 행할 것만을 규정하여 왔으나⁷⁾, 금번 개정을 통해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면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6) [시행 1995.4.1.] [법률 제4795호, 1994.12.22., 일부개정]

7)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재정공시가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정공시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17개 시·도 교육청이 모두 공통된 사항임. 이에 금번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계기로 지난 2015년 2월 교육부는 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공시대상, 공시방법 등 구체적인 세부 계획 수립 중에 있음.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 공시 제도의 효과적 마련 및 추진을 위한 시·도 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공시 담당자 회의자료」(2015.3) 참고.

한 것입니다.

- 동 조례안에서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⁸⁾.

3) 끝으로

- 동 조례안은 현재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함으로서 지방재정운용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재정사항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 등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른 일반적인 위원회 설치 기준과 집행부의 집행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마련한 규정으로 판단되는바, 조례 제정의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5.9.28.] [법률 제13227호, 2015.3.27., 일부개정]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